

공 고

서울특별시성동구공고 제2019-458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시행 공고

우리 구 금호동4가 56-1번지 일대 금호제2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용검사가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8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로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성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 금호제2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힐스테이트서울숲리버]
2. 사업시행자: 금호제2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 사 업 위 치: 성동구 금호동4가 56-1번지 일대
4. 종전의 지적공부 및 새로이 시행할 지적공부 내역

종전의 지적공부(폐쇄)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확정)				
동명	지 번	지목 (필자수)	면적 (㎡)	지 적 공 부	동명	지번	지목	면적(㎡)	지 적 공 부
금호동 4가	56-1 외 198필지	대(163)	27,332.1	- 전산토지대장 199매 - 지적도 1,200 도면일부 - 지적도 500 도면일부	금호 동4가	1551	대	277.4	- 전산토지대장 13매 - 지적도 (전산화일) - 경계점좌표등록부 13매
		도로(31)	7301.3			1551-1	대	4.6	
		잡종지(2)	208			1552	대	428.5	
		공원(1)	282			1553	대	30,945.0	
		유지(1)	153.2			1553-1	대	2.4	
		하천(1)	551			1553-2	대	6.5	
						1553-3	공원	308.0	
						1553-4	공원	1,805.6	
						1553-5	도로	637.8	
						1553-6	도로	343.3	
						1553-7	도로	728.1	
						1553-8	도로	228.4	
						1553-9	도로	74.1	
합계	199필지		35,827.6			13필지		35,789.7	면적 37.9㎡감소

5. 공고기간: 2019. 4. 18 ~ 2019. 5. 2 (14일이상)

6. 열람장소: 성동구청 토지관리과 (전화: 2286-5380~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구청 본관2층]

7. 알림사항: 종전의 지적공부 폐쇄 및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의 시행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열람장소로 연락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중전토지 지번별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금호동4가	56-1	도로	8.0	
2	금호동4가	57-1	도로	64.0	
3	금호동4가	61-2	도로	99.0	
4	금호동4가	62	대	253.0	
5	금호동4가	63	대	219.0	
6	금호동4가	64-1	대	119.0	
7	금호동4가	64-2	도로	128.0	
8	금호동4가	64-3	잡종지	165.0	
9	금호동4가	64-4	대	136.0	
10	금호동4가	64-5	대	66.0	
11	금호동4가	64-6	대	89.0	
12	금호동4가	64-7	대	125.0	
13	금호동4가	64-8	잡종지	43.0	
14	금호동4가	64-9	대	69.0	
15	금호동4가	64-10	대	40.0	
16	금호동4가	64-11	도로	132.0	
17	금호동4가	64-13	대	119.0	
18	금호동4가	64-14	대	36.0	
19	금호동4가	64-16	대	106.0	
20	금호동4가	64-17	대	13.0	
21	금호동4가	64-19	도로	54.0	
22	금호동4가	64-20	도로	11.0	
23	금호동4가	66-2	대	585.0	
24	금호동4가	66-3	대	302.0	
25	금호동4가	66-5	공원	282.0	
26	금호동4가	66-7	도로	7.0	
27	금호동4가	66-9	대	1239.0	
28	금호동4가	66-11	대	331.0	
29	금호동4가	66-12	대	165.0	
30	금호동4가	66-13	대	7.0	
31	금호동4가	66-14	대	292.0	
32	금호동4가	66-15	대	357.0	
33	금호동4가	66-16	대	321.0	
34	금호동4가	66-17	대	175.0	
35	금호동4가	66-18	도로	2.0	
36	금호동4가	66-19	도로	10.0	
37	금호동4가	66-20	도로	2.0	
38	금호동4가	66	대	165.0	
39	금호동4가	68-2	도로	20.0	
40	금호동4가	68-3	대	165.0	
41	금호동4가	68-6	대	165.0	
42	금호동4가	68-7	대	162.0	
43	금호동4가	68-8	대	168.0	
44	금호동4가	68-9	대	195.0	
45	금호동4가	68-11	대	165.0	
46	금호동4가	71-1	도로	152.0	
47	금호동4가	74-1	대	112.0	
48	금호동4가	74-2	대	99.0	
49	금호동4가	74-3	대	116.0	
50	금호동4가	74-4	대	102.0	
51	금호동4가	74-5	대	89.0	

확정토지 지번별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금호동4가	1551	대	277.4	
2	금호동4가	1551-1	대	4.6	
3	금호동4가	1552	대	428.5	
4	금호동4가	1553	대	30,945.00	
5	금호동4가	1553-1	대	2.4	
6	금호동4가	1553-2	대	6.5	
7	금호동4가	1553-3	공원	308	
8	금호동4가	1553-4	공원	1805.6	
9	금호동4가	1553-5	도로	637.8	
10	금호동4가	1553-6	도로	343.3	
11	금호동4가	1553-7	도로	728.1	
12	금호동4가	1553-8	도로	228.4	
13	금호동4가	1553-9	도로	74.1	
		13필지		35789.7	

52	금호동4가	74-6	대	102.0	
53	금호동4가	74-7	대	99.0	
54	금호동4가	74-8	대	10.0	
55	금호동4가	74-9	대	96.0	
56	금호동4가	74-10	대	93.0	
57	금호동4가	74-11	대	99.0	
58	금호동4가	74-12	대	106.0	
59	금호동4가	74-13	대	152.0	
60	금호동4가	74-14	대	122.0	
61	금호동4가	74-15	대	228.0	
62	금호동4가	74-16	대	162.0	
63	금호동4가	74-18	대	116.0	
64	금호동4가	74-19	대	109.0	
65	금호동4가	74-20	대	152.0	
66	금호동4가	74-21	대	50.0	
67	금호동4가	74-22	대	56.0	
68	금호동4가	74-24	대	112.0	
69	금호동4가	74-25	대	46.0	
70	금호동4가	74-26	대	96.0	
71	금호동4가	74-27	대	96.0	
72	금호동4가	74-28	대	106.0	
73	금호동4가	74-29	도로	96.0	
74	금호동4가	74-30	도로	10.0	
75	금호동4가	74-31	도로	81.0	
76	금호동4가	96-1	도로	183.0	
77	금호동4가	103-2	대	425.0	
78	금호동4가	105-1	대	278.0	
79	금호동4가	105-4	대	106.0	
80	금호동4가	105-5	대	7.0	
81	금호동4가	105-7	도로	33.0	
82	금호동4가	105-8	도로	304.0	
83	금호동4가	106-2	대	147.0	
84	금호동4가	106-3	대	99.0	
85	금호동4가	106-4	대	7.0	
86	금호동4가	107	대	132.0	
87	금호동4가	109-5	대	26.0	
88	금호동4가	136-2	도로	70.9	
89	금호동4가	200-19	도로	94.0	
90	금호동4가	201-6	하천	551.0	
91	금호동4가	1530-1	대	138.1	
92	금호동4가	1530-2	대	157.7	
93	금호동4가	1530-3	대	266.8	
94	금호동4가	1530	대	94.2	
95	금호동4가	1531-1	대	160.5	
96	금호동4가	1531-2	대	176.8	
97	금호동4가	1531-3	대	167.9	
98	금호동4가	1531-4	대	174.1	
99	금호동4가	1531-5	대	164.2	
100	금호동4가	1531-6	대	164.5	
101	금호동4가	1531-7	대	163.9	
102	금호동4가	1531-8	대	165.3	
103	금호동4가	1531-9	대	163.4	
104	금호동4가	1531	대	165.5	
105	금호동4가	1532-1	대	175.8	
106	금호동4가	1532-2	대	327.8	

107	금호동4가	1532-3	대	44.7	
108	금호동4가	1532-4	대	4.0	
109	금호동4가	1532-5	도로	69.4	
110	금호동4가	1532-6	대	183.1	
111	금호동4가	1532-7	대	12.6	
112	금호동4가	1532-8	대	102.1	
113	금호동4가	1532-9	대	179.6	
114	금호동4가	1532-10	대	172.5	
115	금호동4가	1532-11	대	133.4	
116	금호동4가	1532-12	대	147.1	
117	금호동4가	1532-13	대	193.0	
118	금호동4가	1532-14	도로	47.6	
119	금호동4가	1532-15	대	93.5	
120	금호동4가	1532-16	대	203.0	
121	금호동4가	1532-17	대	210.1	
122	금호동4가	1532	대	376.6	
123	금호동4가	1533-1	대	101.8	
124	금호동4가	1533-2	대	105.2	
125	금호동4가	1533-3	대	227.4	
126	금호동4가	1533-4	대	258.9	
127	금호동4가	1533-5	대	87.0	
128	금호동4가	1533	대	124.4	
129	금호동4가	1534-1	대	118.7	
130	금호동4가	1534-2	대	90.5	
131	금호동4가	1534-3	대	136.1	
132	금호동4가	1534	대	122.7	
133	금호동4가	1535-1	대	74.8	
134	금호동4가	1535-2	대	115.7	
135	금호동4가	1535-3	대	103.7	
136	금호동4가	1535-4	대	85.1	
137	금호동4가	1535-5	대	87.6	
138	금호동4가	1535-6	대	98.6	
139	금호동4가	1535-7	유지	153.2	
140	금호동4가	1535	대	180.4	
141	금호동4가	1536	대	173.2	
142	금호동4가	1541-1	도로	475.8	
143	금호동4가	1541-2	도로	112.7	
144	금호동4가	1541	도로	860.9	
145	금호동4가	1542-1	도로	1011.2	
146	금호동4가	1542-2	도로	2421.2	
147	금호동4가	1543	도로	136.8	
148	금호동4가	1544-1	도로	13.2	
149	금호동4가	1544-2	도로	591.6	
150	금호동4가	1545-1	대	178.7	
151	금호동4가	1545-2	대	175.5	
152	금호동4가	1545-3	대	180.7	
153	금호동4가	1545-4	대	575.4	
154	금호동4가	1545	대	356.1	
155	금호동4가	1546-1	대	192.2	
156	금호동4가	1546-2	대	175.8	
157	금호동4가	1546-3	대	160.5	
158	금호동4가	1546-4	대	516.4	
159	금호동4가	1546-5	대	197.1	
160	금호동4가	1546-6	대	160.8	
161	금호동4가	1546-7	대	177.3	

162	금호동4가	1546-8	대	361.7	
163	금호동4가	1546	대	359.6	
164	금호동4가	1547-3	대	249.2	
165	금호동4가	1547-4	대	212.0	
166	금호동4가	1547-5	대	209.5	
167	금호동4가	1547-6	대	190.2	
168	금호동4가	1547-7	대	192.9	
169	금호동4가	1547-8	대	256.3	
170	금호동4가	1548-1	대	171.0	
171	금호동4가	1548-2	대	178.2	
172	금호동4가	1548-3	대	159.7	
173	금호동4가	1548-4	대	158.9	
174	금호동4가	1548-5	대	175.0	
175	금호동4가	1548-6	대	168.7	
176	금호동4가	1548-7	대	157.1	
177	금호동4가	1548-8	대	112.6	
178	금호동4가	1548-9	대	154.6	
179	금호동4가	1548-10	대	157.9	
180	금호동4가	1548	대	341.2	
181	금호동4가	1549-1	대	130.4	
182	금호동4가	1549-2	대	146.7	
183	금호동4가	1549-3	대	182.3	
184	금호동4가	1549-4	대	186.2	
185	금호동4가	1549-5	대	190.1	
186	금호동4가	1549-6	대	92.3	
187	금호동4가	1549-7	대	130.1	
188	금호동4가	1549-8	대	105.3	
189	금호동4가	1549-9	대	165.5	
190	금호동4가	1549-10	대	186.2	
191	금호동4가	1549-11	대	183.5	
192	금호동4가	1549-12	대	177.3	
193	금호동4가	1549-13	대	188.9	
194	금호동4가	1549-14	대	105.1	
195	금호동4가	1549-15	대	145.9	
196	금호동4가	1549-16	대	106.0	
197	금호동4가	1549-17	대	143.1	
198	금호동4가	1549-18	대	93.3	
199	금호동4가	1549	대	185.5	
		199필지		35827.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19-467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4월 18일

성 동 구 청 장

1. 제정이유

성동구와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성동구의 각 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의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사업의 범위(안 제1조~3조)
- 나. 계획의 수립 시행 및 보조금 지원(안 제4조~ 5조)
- 다.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6조~14조)
- 라. 혁신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기능(안 제15조~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참조: 교육지원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과(전화: 2286-5858, FAX: 2286-5907, E-mail: ifjs@sd.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교육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교육”이란 지역의 다양한 교육인프라의 참여와 협력으로 아동 및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교육을 말한다.
2. “민·관·학 거버넌스”란 혁신교육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육시민사회단체, 행정기관, 학교의 참여를 통해 교육의제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이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혁신교육 사업의 범위) 구 혁신교육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공교육 운영 지원
2. 마을과 학교의 협력 지원 사업
3.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학교의 교과과정 외에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4. 교육 자원 발굴 및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망 구축 지원
5. 구 교육관련 지역특화 사업
6.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7. 그 밖에 혁신교육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혁신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혁신교육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혁신교육 운영계획(이하 “혁신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 등과 연계하여 혁신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혁신교육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개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혁신교육 사업의 활성화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혁신교육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혁신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혁신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공동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2명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구의 혁신교육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 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 나. 혁신교육 관계 기관의 장

다. 혁신교육 관계 기관에서 추천하는 관계자 및 전문가

라. 혁신교육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간사 1명은 구의 혁신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다른 간사 1명은 혁신교육 관계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8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전출,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인 공동위원장이 다른 공동위원장들과 협의하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정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재적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업무에 대해서 조정하고 기획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조정한다.

1.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협의사항 검토
2.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3.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컨설팅 및 평가 준비
4.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모니터링 및 환류
5. 민·관·학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혁신교육 추진과 관련된 사항

제13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실무협의회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공동위원장 1명은 구의 혁신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2명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의 혁신교육 업무 담당 과장 및 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혁신교육 관련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구 소재 초·중·고등학교 교원, 교육관련 단체 대표 또는 회원, 교육에 관심이 많은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 해촉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실무협의회 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⑥ 상정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재적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⑦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2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 혁신교육 업무 담당자와 혁신교육 관계 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혁신교육 관계기관 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⑧ 실무협의회 산하에 필요에 따라 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⑨ 분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혁신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혁신교육지원센터(이하 “혁신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혁신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혁신교육지원센터의 기능) 혁신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① 교육 인적·물적 자원 기초조사 및 발굴
- ②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운영
- ③ 마을과 학교의 협력지원 사업
- ④ 그 밖에 혁신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19-471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4월 18일

성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재난예찰활동 및 재난발생 시 이재민 구호 등 평소 재난에 앞장서는 자율방재단의 활동 효율 및 안전 강화를 위하여 재해보상에 대한 종류와 지급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의 기준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재단의 일원으로써 역할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함

2. 주요 개정내용

- 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재단 운영조례로 변경함(안 제2조)
- 나.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4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함을 명확히 함(안 제3조)
- 다. 구청장이 단장을 해임하는 경우를 정비하고 단장이 단원을 해임하는 사유를 정비함(안 제5조)
- 라. 지원 중 운임, 숙박비, 식비 여비의 지급 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신설함(안 제9조)
- 마. 임원 및 단원의 교육에 대한 근거를 정비함(안 제12조)
- 바. 방재단이 활동 중 재해를 입은 경우 1년 이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의 종류를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으로 정함(안 제1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참조:교육지원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안전관리과(전화: 2286-6276, FAX: 2286-5945, E-mail: dmswn6154@sd.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4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② 방재단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방재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이 호선(互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방재단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재단의 참가 자격은 성동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⑦ 동 단위로 구성된 자율방재단의 명칭은 “○○○동 자율방재단”이라 하며, 동 지역자율방재단 단원(이하 “동 단원”이라 한다)은 성동구 방재단 단원이 되며 성동구 방재단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⑧ 동 자율방재단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단위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제4조(임원 및 임기 등) ① 단장은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성동구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동 대표는 해당 동 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협의회를 통해 단위 등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단원이 시·군·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6조(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 단장 선출, 단원의 해임,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며, 인원은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단원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협의회 회원 과반수이상의 서명을 받아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단장은 소집 요청에 따라 협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⑦ 협의회에 참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임무) 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문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은 일반회원과 전문회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③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관내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 통

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공중보건관리 등
9. 재난을 대응, 복구하기 위한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 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 ④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 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8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방송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서울특별시 성동

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위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원이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전화 및 기타 소요비용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재난지역의 현장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 여비
6. 그 밖에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⑨ 제8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1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12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3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성동구가 주관 또는 참가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중앙지원단 자문) ①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4조의 중앙지원단에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답한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여 월별로 익월 5일 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재해보상)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에 다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방재단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명칭은 "성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신 설>	<u>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u> 제1조(목적)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 ----- ----- <u>자율방재단</u>----- ----- -----.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4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② 방재단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방재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이 호선(互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 설>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방재단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신 설>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방재단의 참가 자격은 성동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신 설>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신 설>

⑦ 동 단위로 구성된 자율방재단의 명칭은 “○○○동 자율방재단”이라 하며, 동 지역자율방재단 단원(이하 “동 단원”이라 한다)은 성동구 방재단 단원이 되며 성동구 방재단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신 설>

⑧ 동 자율방재단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인, 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② 단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 회원 3분의 2이상 참석에 참석한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단원 중에서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부단장은 단장이 지정한다.

④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방재단의 참가 자격은 성동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⑦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 시 인원은 20명 내외로 한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람으로 한다.

<삭 제>

선포될 경우 임원과 협의하여 단장이 동 방재단 구성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⑧ 동 단위로 구성된 방재단의 명칭은 “○○○동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하며, 동 방재단원은 방재단 단원이 되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⑨ 동 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라 한다) 해당 동 단원 중 과반수 찬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신 설>

제5조(해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협의회를 통해 단원등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단원이 시·군·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

제5조(임원 및 임기 등) ① ~ ④ (생략)

⑤ 동대표는 해당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6조(해임) 단원(단장, 부단장, 간사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7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 회원 3분의 2이상 참석에 참석인원과반수의 찬성으로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성동구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

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4조(임원 및 임기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동 대표는 해당 동 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 간사, 동 -----
----- 가능하며,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 단장 선출, 단원의 해임, 방재단의 활동방향 및 정책에 대한 검토·조정 및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단체의 대표, 동대표, 방재전문가로 15~30명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단원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협의회회원 과반수이상의 서명을 받아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단장은 소집 요청에 따라 협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 ⑦ (생략)

제8조(임무) ① (생략)

②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③ ~ ⑤ (생략)

제6조(자율방재협의회) ① -----

----- 검토

· 조정 및 -- 심의 · 조정을 -----

-----.

② -----

----- 동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며, 인원은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한다.

③ -----

----- 협의회 회

원 -----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일반회원과 전문회원-----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 (생 략)제10조(운영 등) ① ~ ③ (생 략)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서울특별시성동구 재난상황실(이하 "재난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안전 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재난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방재단원이 재난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전화 및 기타 소요비용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성동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신 설>

⑨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

제8조 (현행 제9조와 같음)제9조(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

----- 재난안전 대책본부장과 -----
-.

⑤ 재난안전상황실-----
-----.

⑥ 단원이 재난안전상황실-----
-----.

⑦ -----
---- 별지 제5호 서식-----.

<삭 제>

⑨ 제8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⑧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

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 5. (생략)

6.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신설>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생략)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 있으며, -----.

1. -----
-----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

2.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 비용 등 기타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제10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2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1조(출입증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별지 제6호 서식-----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13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4조 · 제15조 (생략)

제16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월별로 익월 5일 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

<삭제>

제13조 · 제14조 (현행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음)

제15조(감독) ① -----
사용내역과 증빙서류 등-----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재해보상)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에 다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u>제17조</u> (생 략)	<u>사본</u> <u>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u> <u>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u> <u>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u> <u>사본</u> <u>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재</u> <u>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u> <u>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u> <u>수조치 한다.</u> <u>제16조</u> (현행 제17조와 같음)
--------------------------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19-476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성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상위 법령 개정과 관내 성동소방서의 신설 및 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區 관리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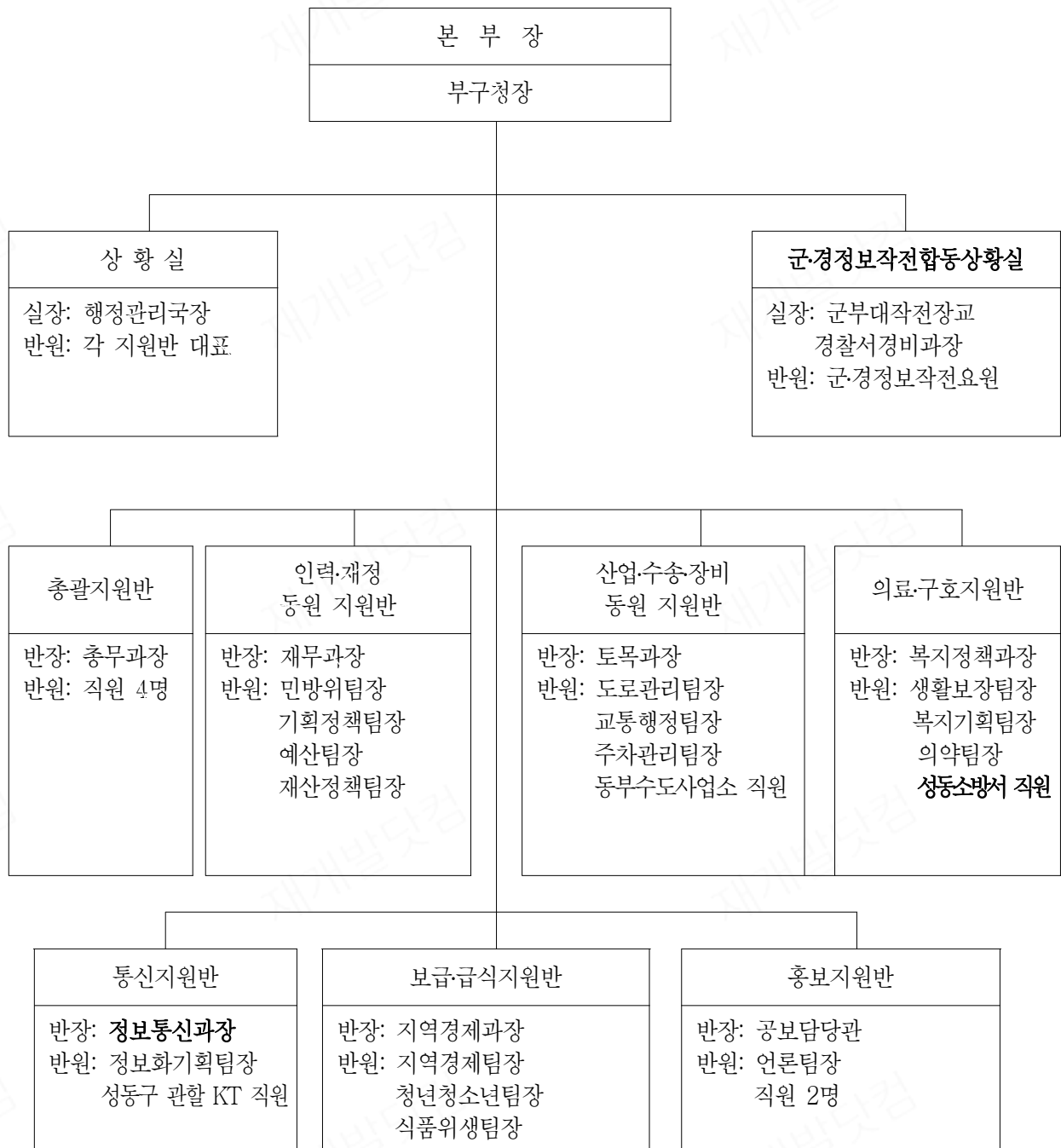
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 변경 (안 제3조제3항)

- 국가정보원 조정관 →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
-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담당관 →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담당관
- 성동구 지역 소방서장 → 성동소방서장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사장 → 서울교통공사 사장

나. 성동소방서의 신설과 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원 정비 (안 별표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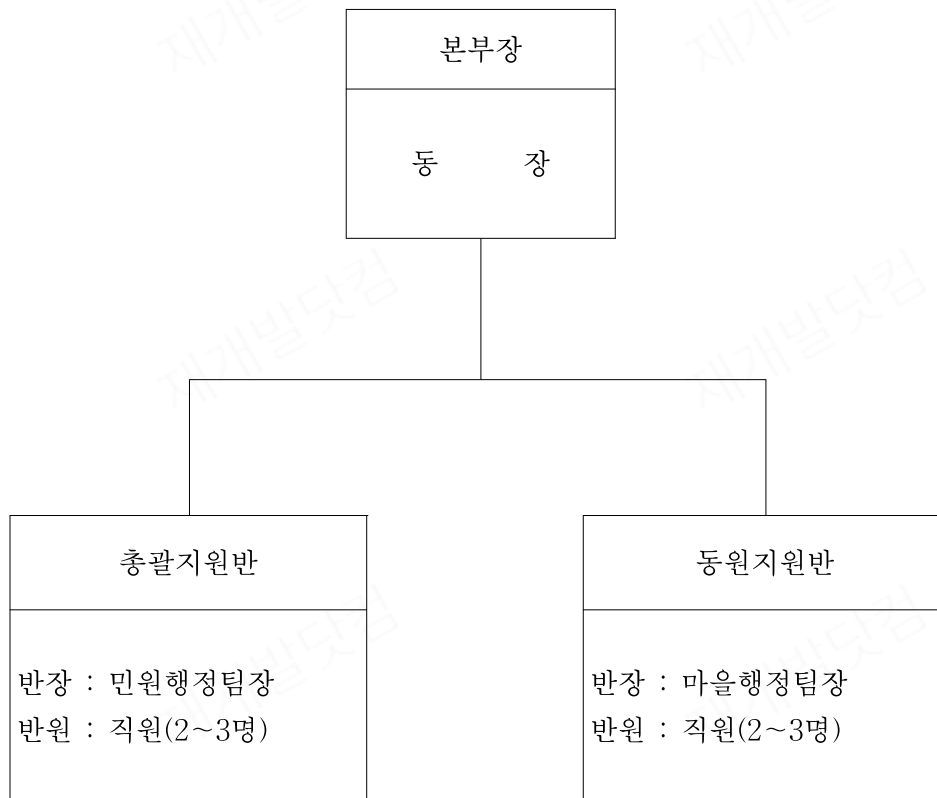
[별표 1]

성동구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별표 2]

洞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참조: 총무과, 전화: 02-2286-5089, FAX: 02-2286-5902, Email: ytlim75@sd.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5호 중 “조정관”을 “통합방위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국군기무부대”를 “군사안보지원부대”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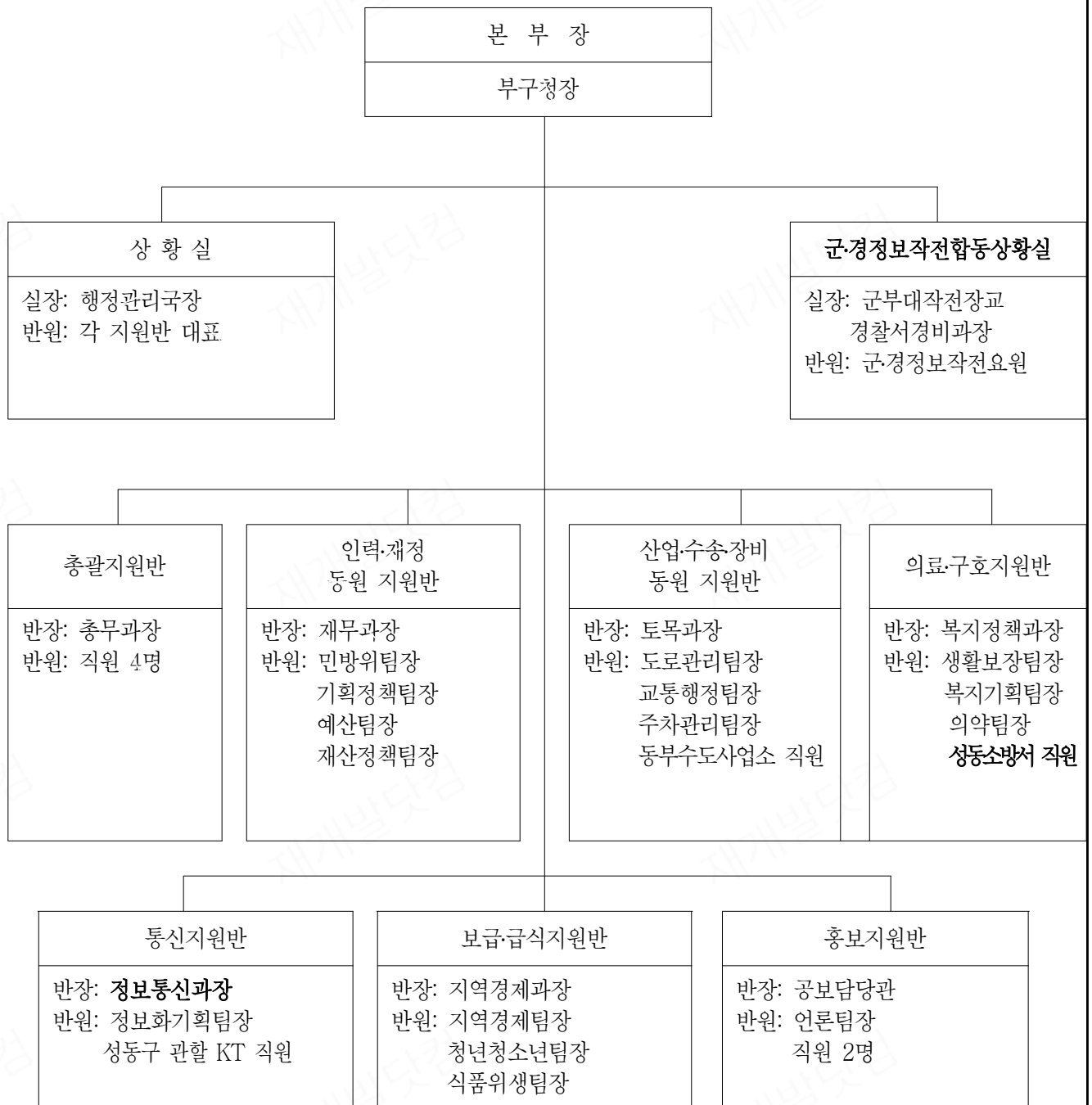
9. 성동소방서장

제3조제3항제11호 중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를 “서울교통공사”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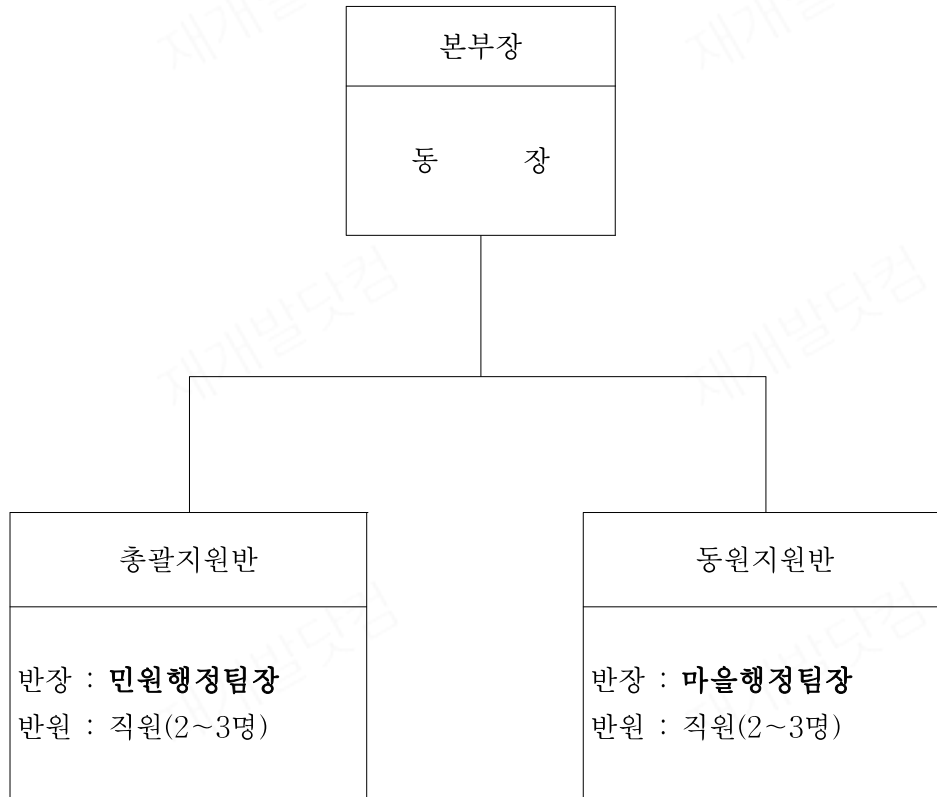
[별표 1]

성동구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별표 2]

洞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①·② (생략)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1. ~ 4. (생략) 5. 국가정보원 <u>조정관</u> 6. (생략) 7. 성동구 지역 <u>국군기무부대의 장</u> 또는 담당관 8. (생략) 9. <u>성동구 지역 소방서장</u> 10. (생략) 11. <u>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u> 사장 12. ~ 17. (생략) ④ (생략) [별표 1] 성동구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table><tr><td>의료·구호지원반</td></tr><tr><td>반장: 복지정책과장 반원: 생활보장팀장 복지기획팀장 의약팀장 <u>성동구 지역 소방서 직원</u></td></tr></table>	의료·구호지원반	반장: 복지정책과장 반원: 생활보장팀장 복지기획팀장 의약팀장 <u>성동구 지역 소방서 직원</u>	제3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4. (현행과 같음) 5. ----- <u>통합방위담당관</u> 6. (현행과 같음) 7. ----- <u>군사안보지원부대</u>----- ----- 8. (현행과 같음) 9. <u>성동소방서장</u> 10. (현행과 같음) 11. <u>서울교통공사</u> ----- 12. ~ 1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별표 1] ----- <table><tr><td>-----</td></tr><tr><td>반장: ----- 반원: ----- ----- ----- <u>성동소방서 직원</u></td></tr></table>	-----	반장: ----- 반원: ----- ----- ----- <u>성동소방서 직원</u>
의료·구호지원반					
반장: 복지정책과장 반원: 생활보장팀장 복지기획팀장 의약팀장 <u>성동구 지역 소방서 직원</u>					

반장: ----- 반원: ----- ----- ----- <u>성동소방서 직원</u>					

통신지원반
반장: <u>전산정보과장</u> 반원: 정보화기획팀장 성동구 관할 KT 직원

[별표 2]

洞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총괄지원반
반장: 마을행정팀장 반원: 직원(2 ~3명)

동원지원반
반장: 기초복지팀장 반원: 직원(2 ~3명)

반장: <u>정보통신과장</u> 반원: ----- -----

[별표 1]

반장: <u>민원행정팀장</u> 반원: -----

반장: <u>마을행정팀장</u> 반원: -----